

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

	승인일	시행일	승인권자
재정	2008.06.27	2008.06.27	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
1 차 개정	2009.03.02	2009.03.02	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
2 차 개정	2009.09.24	2009.09.24	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
3 차 개정	2012.05.09	2012.05.09	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
4 차 개정	2014.01.27	2014.01.27	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

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, 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0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른 증권(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 한다)에 한한다. 단,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의 계좌를 두고 계좌별로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사전자산배분"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투자재산신탁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"운용담당자"는 실제 및 가상의 투자신탁을 직접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③ "매매담당자"는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개정 등) 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,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제2장 사전자산배분

제5조(일반원칙) 회사의 자산배분절차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을 원칙으로 한다 .

- ① 회사는 매매와 자산배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.
- ②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,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은 특정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.
- ③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 및 사전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전자산배분원칙) (개정 2012년05월09일, 2014년 1월 27일) ① 운용담당자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별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 취득, 매각한 자산은 각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

②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.

③ 공모주 등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을 기재한 공모주사전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공모주 청약가능금액은 투자신탁규약에서 정한 해당 자산의 최대편입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공모형 투자신탁. 이 경우 순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공모주 투자신탁. 이 경우 순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(개정 2014년 1월 27일)

⑤ 회사가 배정받은 공모주는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한다.

⑥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사오입하여 배정하되 잔여수량은 청약수량이 가장 많은 투자신탁에 배정한다.

⑦ 대량매매(시간외 대량매매에 한 한다)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참여 대상펀드를 선정 하여 CIO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분 하여야 하며,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⑧ 최종 매매체결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재산별 주문비율(주식수 비율)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. 또한, 투자신탁재산별 수량 배분후 잔여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주문펀드에 잔여수량을 배분할 수 있고, 소량의 배분만이 이루어져 보유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을 증가시키거나 전혀 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.

⑨ 일반적인 배분원칙을 벗어나는 배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, 매매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법규 등(규약, 운용계획서 등 포함)의 위반 및 위반방지를 위한 수량정정 또는 투자신탁 정정
2.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액 증감으로 인한 수량정정 또는 펀드정정
3.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CIO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

제7조(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) 회사는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

제8조(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) ①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

-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주문금액, 수량,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CIO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자산배분내역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⑨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실행

- 제9조(매매주문서의 작성)**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종목, 주문금액, 수량, 가격,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, 지정가격,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주문방법 혹은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주문을 접수할 수 있다.

제10조(매매주문서의 실행)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.

제5장 자산배분내역서 작성

- 제11조(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)**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,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제6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

제12조(대상자산) 제2조에 정하는 자산에 대해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정하는 겸직금지 예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8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